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11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)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
(안 제11조제3항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별지 제3호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2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

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(전화 : 02-330-1223, 팩스 : 02-330-1579)로  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 
구정소식(입법예고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제정 내용	의 견	비 고